

『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
일괄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붙여쓰기 되어 있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반영(안 제1장 : 안 제1조 ~ 안 제34조)
-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(안 제2장)
 -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개정(안 제35조, 안 제36조)
 -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원칙 개정(안 제37조)
 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3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

- 붙여쓰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규정 및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 및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사항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제명, 관련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여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